국세청, 115만명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계속·반복적 용역 대가 사업소득에 해당퇴직후 고문 재취업 때도 근로소득 해당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기업에 나가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냈다.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A는 이를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한 업체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국세청은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며 “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말했다. 임원 B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제조업체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올렸다. 국세청이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하니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보다 많이 책정한 것을 발견했다.국세청은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많았다”고 밝혔다.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